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

의안 번호	77
----------	----

제안년월일 : 2007년 1월 29일

제안자 : 행정자치위원장

1. 주 문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전국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논란을 제도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의 지방의회 도입을 촉구함

2. 제안이유

가. 선거에 의해 지방자치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집행기관의 별정직·계약직 공무원의 임용과 출자, 출연기관의 임원 임명 등 자치단체장의 인사행정이 선거에 대한 보은인사, 논공행상 인사로 변질되는 폐해가 반복되고 있음

나. 이러한 폐해는 결국 도민에게 돌아가게 되므로 150만 도민의 대변자인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인사행정의 제도적 정착을 위해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지방의회 도입이 필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조속한 도입을 위해 국회와 중앙정부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노력과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정비를 강력하게 촉구하기 위함

『인사청문회』 도입 촉구 결의안

우리 충청북도의회는 최근 충청북도의 개방형 직위 인사과정에서 야기된 논란으로 인해 도정의 신뢰성이 실추되고 민관협력 관계가 훼손되는 일련의 사태에 대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이러한 인사행정의 난맥상이 반복될 경우, 건강한 지방자치 발전에 심각한 저해요인이 될 것이며, 결국 그 피해는 150만 도민에게 돌아갈 것이므로 최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방지하는 제도적 대안으로서, 『인사청문회』 제도의 지방의회 도입을 촉구하는 바이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대의민주주의를 시행하고 있는 많은 선진국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국회에서도 국무총리, 국무위원 등 행정부의 주요보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난 2000년부터 도입되었고, 2006년 7월 1일부터는 특별법에 의해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고 있는 만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과 명실상부한 지방분권이 이루어지기 위해 반드시 우리 지방의회에도 도입이 필요한 제도이다.

1995년 민선지방자치가 도입된 이래 지방자치단체장의 별정

직·계약직 공무원 임용과 출자·출연기관 임원급 임명이 선거에 대한 보은인사, 논공행상 인사로 이용되는 작금의 폐해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첫째, 우리는 150만 충청도민의 대변자인 충청북도의회 의원으로서, 도민의 의사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금번 충청북도의 개방형 직위 인사가 결과적으로 도민화합에 도움이 되지 못한 인사였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둘째, 우리는 계속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 논란을 지역의 대의기관인 지방의회가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등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해 「인사청문회」 제도를 지방의회에 도입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국회와 중앙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셋째, 명실상부한 지방분권 및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을 위해 「인사청문회」 제도가 지방의회에 도입될 수 있도록 16개 시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기초의회에서도 적극 노력해줄 것을 호소한다.

2007. 1. 29.

忠淸北道議會 議員 一同

